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584호 2021. 12. 15.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1-154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1
- 정선군 고시 제2021-155호 정선(사북)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 동탄지구) 사업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3
- 정선군 고시 제2021-158호 북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기간 변경 고시.....5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1-1429호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공사 완료 공고·7
- 정선군 공고 제2021-1446호 「정선종합경기장 개보수 정비사업」 육상트랙 제품 선정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9

- 정선군 공고 제2021-1452호 둔치 주차장 침수위험감시 CCTV 설치 행정예고.....15
- 정선군 공고 제2021-1462호 3차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공고.....18
- 정선군 공고 제2021-1467호 정선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입법예고.....22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1-154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사무 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 및 문화관광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3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중로2-8호선 개설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합리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군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560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및 사유서

1)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공원	문화 공원	정선읍 애산리 560 일원	40,752	증)1,605	42,357	강고제235호 (2013.6.14)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②	아리랑 문화 공원	· 면적 변경 - 면적변경 : A=40,752m ² → 42,357m ² 증) 1,605m ²	· 아리랑 문화공원에 접한 중로2-8호선 개설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합리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군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정선
군청 도시과 및 문화관광과 비치)

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에서 열람가능
(<http://www.eum.go.kr>)

정선군 고시 제2021-155호

정선(사북)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 동탄지구)
사업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정선군고시 제2019-38호(2019.03.08.)로 최초 결정 및 정선군고시 제2019-133호(2019. 6. 21.) 최초 인가 고시된 정선(사북)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 동탄지구) 사업에 대하여 준공기한 연장 등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5-9번지 일원(변경 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1) 종 류 : 정선(사북)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 동탄지구) 사업
- 2) 명 칭 : 동탄지구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없음)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위치	규모	기시행	금회시행	
환경기초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사북읍 사북리 375-9번지 일원	A=14,376㎡	-	A=14,376㎡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변경)

- 1) 성 명 : 당초 한국광해관리공단 → 변경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표 황규연
- 2)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2

마. 사업기간 : 당초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12.31.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2. 11. 09.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없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사북읍 사북리	375-9	잡	14,376	14,376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2	한국광해 광업공단
계		1필지		14,376	14,376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정선군 고시 제2021-158호

북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기간 변경 고시

농촌 중심지의 중심거점공간을 육성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북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기간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8일

정 선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북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 북평면 중심지 거점공간을 육성하고 마을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역량 및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사업구역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외 배후마을 일원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복지회관 리모델링, 주차장 조성, 북평 문화광장
 - 지 역 경 관 개 선 : 명품테마거리, 근대문화거리 조성
 - 지 역 역 량 강 화 : 주민교육 및 홍보·마케팅, 부대비용 등

4. 사 업 비 : 6,125백만원(국비 3,938/군비1,687/군비추가500)

5. 사업기간

내 용	당초	변경
북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017년 ~ 2021년	2017년 ~ 2022년

○ 연장사유 : 지역경관개선(근대문화거리) 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6.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7. 위(수)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사

※ 기타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에 비치된 시행계획서 열람 가능
(정선군청 도시과 도시개발 ☎033-560-2464)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1-1429호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공사 완료 공고

강원도고시 제2003-300호(2003. 12. 13)로 최초 결정 되고 정선군고시 제2021-79호(2021. 6. 04)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증축공사에 대하여 사업 완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 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73-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사업

나. 명 칭 :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금회시행)

(단위: m²)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면적(m ²)	금회 시행	
교통시설	자동차정류장	A=5,043m ²	☐ 자동차정류장 A=7,870m ² (구역면적) ☐ 증축내용 - 정비동 증축 A=67.42m ²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 정선군수(안전과)

나.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

가. 착수일 : 2021. 6. 22

나. 준공일 : 2021. 11.03

정선군 공고 제2021-1446호

「정선종합경기장 개보수 정비사업」
육상트랙 제품 선정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정선군에서 시행하는 「정선종합경기장 개보수 정비사업 육상트랙 제품 선정」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후보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9일

정 선 군 수

1. 모집분야 : 토목(시공, 품질시험), 육상(감독, 코치)분야
※ 신청서(전문분야 항목)에 위 모집분야 목록 중 1개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인원: 예비위원 21명이상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7명의 3배수 이상)
 - 총 인원 : 21명
 - 구성인원 : 7명
 - 예비위원 : 2명
3. 자격조건 및 제척대상
 - 가. 자격조건
 -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산하 공기관) 공무원(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임직원)
 - 2)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자
 - 3) 2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4) 군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정선군체육회,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임직원
 - 3)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육상경기연맹단체 소속(감독, 코치)
- 나. 제척대상
 -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4. 평가위원의 회피 사유 : 제척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 자격요건 및 제척대상에 해당되는 지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의 경력 사항란에 경력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5.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12. 09.(목) ~ 12. 23.(목) (접수시간: 09:00 ~ 18:00)
 나. 접수방법 : 담당자 e-mail 로만 접수 (jchb39@korea.kr)
 ※ 이메일로 제출 시 제출서류 서명 날인한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첨부 제출
 ※ 공문제출 시 비공개로 제출
 다. 제출서류 : 평가위원(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보안각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참가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6.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예정)일시 : 2021. 12. 23.(목) 예정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선정인원 : 7명
 다. 선정방법 : 평가위원 자체 선정 후 위원 사전 공개
 1)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선정(총7명) * 당연직 2명(공단, 체육단체)제외
 ※ 불참자 대비 추가위원 지정가능
 라. 선정결과 통보 : 선정된 위원에게 개별 유선 통지
7. 평가 예정일 : 2022. 1월 중순 예정(일정 장소에서 업체별 제품설명 평가)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하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은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평가 완료 시 해촉된 것으로 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정선군 문화관광과(☎033-560-29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신청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마. 신청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공고문의 일정은 정선군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공고 마감일 현재 모집위원 미충족시 정선군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 첨부 1.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보안각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끝.

[별지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 12. .

작성자 :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2]

보 안 각 서

- 평가대상 : 「정선종합경기장 개보수 정비사업 육상트랙 제품 선정」 제안서
- 시행부서 : 정선군 시설국 문화관광과

본인은 위 공모의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신청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 12. .

서약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정선군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정선군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신청서 기재사항
 - ▶ 등록신청서 상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
- <선택정보> 없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위와 같은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정선군 공고 제2021-1452호

둔치 주차장 침수위험감시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8일

정 선 군 수

1. 설치목적

-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변 둔치 주차장, 하상도로, 상습침수도로, 산책로 지역에 차량 침수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여 군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의 2(재난 예보·경보체계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시행기관 : 정선군 시설국(건설과)

4. 공고방법 : 정선군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년 12월 08일 ~ 12월 28일 (20일간)

6. 설치장소

연번	품명	설치장소	수량	단위	비고
1	CCTV 영상 시스템	정선읍 봉양리 90-2번지	1	식	

7.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 주변 및 24시간 실시간 촬영

8.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예산군 홈페이지 등

다. 제 출 처 : 정선군청 시설국(건설과) 재해예방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전 화 : 정선군청 건설과 033-560-2498

라. 제출기한 : 2021년 12월 28일까지

9.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과(033-560-24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예고명	둔치 침수위험감시 CCTV 설치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치장소		검토의견(의견 제출내용)		

하천변 둔치 주차장 등 침수차단시설의 영상정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21-1462호

3차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공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난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차 정선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정 선 군 수

1. 개요

- ☐ 공 고 명 : 3차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 ☐ 지원근거 :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 지원대상 : 2021. 11. 22. 00:00 기준
 - ① 기준일 현재부터 신청일 까지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 ② 내국인 1인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 또는 정선군에 거소 등록되어 있는 결혼이민자(F6), 또는 영주권자(F5)
-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 ☐ 지급방법 : 정선아리랑상품권
- ☐ 신 청 자 : 세대별 세대주 또는 세대원 (동거인은 별도의 가구로 인정됨)
 - ※ 미성년 세대일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지참 신청
- ☐ 신청기간 : 2021. 12. 20.(월) ~ 2022. 1. 21.(금)
 -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 신청서류
 - 신청서 (위임장 포함)
 - 신청인 신분증
 - 외국인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확인이 가능한 서류
- ☐ 지원금 사용
 - 사용처 : 정선군내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2. 신청요건

☐ 신 청 자 : 세대별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신청자격

- 성인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지원금 일괄 수령 가능
- 동거인의 경우, 별도 세대로 간주하여 개별 신청
- 미성년자 세대일 경우 본인 신분확인 서류 지참 신청

▶ 대리인 범위: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주민등록등본 상 증명 가능한 자)
 [예외] 세대주와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 관계 확인 시 대리 신청 가능

○ 태아의 경우 : 기준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정선군민이며 신청 기간 내 출생 시 부모가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주민등록 말소자 등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 이민출국자, 재외국민출국자 및 신고자, 이민출국자)
- 기준일('21. 11. 22. 0시) 이후 전입자
- 재난기본소득 신청일 이전 전출자

3. 문의처 및 기타사항

☐ 문의처: 정선군 콜센터, 경제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정선군 콜센터 : 1544-9053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정선군 경제과	560 - 2324	화암면	560 - 2795
정선읍	560 - 2844	남 면	560 - 2655
고한읍	560 - 2304	여량면	560 - 2797
사북읍	560 - 2626	북평면	560 - 2773
신동읍	560 - 2635	임계면	560 - 2686

☐ 기타사항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검토 과정에서 추가확인 필요시 신청자에게 전화 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와 신청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지급 일자가 정해진 경우 해당 일자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신청서

[서식1]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신청 및 청구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폰번호)	대리인과의 관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임동의 (서명도장무인)
신청인 (대리인)				예 ☐ 아니오 ☐	
위임인				예 ☐ 아니오 ☐	
위임인				예 ☐ 아니오 ☐	
위임인				예 ☐ 아니오 ☐	
위임인				예 ☐ 아니오 ☐	
위임인				예 ☐ 아니오 ☐	
위임인				예 ☐ 아니오 ☐	
위임인				예 ☐ 아니오 ☐	

지급대상자 수	
담당자 확인	
신청번호	

본인은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신청·수령하였으며, 위임을 받아 대리신청한 경우 수령금을 위임자에게 전달하고, 부정 수령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의 민원발생 시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수 귀하

청구수령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안내	유의 사항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대리인과의 관계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대상자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세대주 및 신청 가구의 가구원은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가급적 가구단위 신청을 권장 드립니다.(타 세대 대리 불가능) 3.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 위임장을 작성신청한 경우, 「형법」 제231조,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1-1467호

정선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입법예고

「정선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전자인증제 도입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같은 법적효력이 있고, 대체가 가능하여 청산금 수령자 확인 시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추가하여 환지청산금 취급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3조 1항에 따라 청산금 수령자 확인 시 인감증명서 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추가하며 주민등록증 대신 신분증으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8조 제4항)

3. 개정 규칙 별첨

4. 입법예고 : 2021. 12. 15. ~ 2021. 12. 24.

5. 의견제출

-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농업축산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연락처 : 전화(033-560-2444), 팩스(033-560-2599)

- 주 소 : (23161)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환지 청산금 취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중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증 등” 을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분증 등”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제7조 (생 략)	제1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 (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만료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청산금의 교부) ①----- ----- ----- ----- -----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 -----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성명	1. ----- 2. -----
2. 수령장소 및 날짜	3. -----
3. 교부금의 명세	4. -----
4. 금회교부액	③ ----- ----- ----- ----- -----
③ 교부금은 법제41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 전액이 징수완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징수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④ ----- ----- <u>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분증 등을</u> -----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u>인감증명과 주민등록증</u> 등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제14조 (생 략)	제10조 ~ 제14조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 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현 행 규 칙

□ 정선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 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7.19., 2008.04.14., 2015.9.1.>

제2조(적용범위) 환지 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

제3조 (현금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 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재산관서의 대체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1. 청산조서(환지 계획서대로 대산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환지청산금 수납부
4. 환지청산금 지급부

제5조(납부통지) ①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07.19., 2008.04.14., 2015.9.1.>

②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14.14, 2015.9.1.>

②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 이내에 청산 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성명
2. 수령자소 및 날짜<개정 2015.9.1.>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교부액

③교부금은 법 제41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 전액이 징수완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1996.07.19., 2008.04.14.>

④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9.1.>

②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개정 2015.9.1.>

제11조(교부금의 상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쇄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착오지급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가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에 환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9.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